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11호 2021. 7. (수)</p>	
---	--	---

선 결	기관 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646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647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10
거창군 조례 제2648호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17
거창군 조례 제264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거창군 조례 제2650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거창군 조례 제2651호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2
거창군 조례 제2652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36
거창군 조례 제2653호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거창군 조례 제2654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거창군 조례 제2655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거창군 조례 제2656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거창군 조례 제2657호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78
거창군 조례 제2658호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86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14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90
---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46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기존 제2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기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거창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8조·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u>	<u>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정조정위원회</u>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u>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u>거창군정조정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u>각1인</u> 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구성) ① <u>위원회</u>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u>각 1명</u> 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u>	1.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u>
2. <u>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u>	2. <u>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u>
3. <u>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u>	3. <u>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u>
4. <u>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5. <u>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6. <u>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u>	
7. <u>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u>	
8. 「 <u>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u> 」 제5조에 따른 <u>보안심사위원회</u> 에서 심의할 사항	
9. <u>건당 5백만원 이상 채납자의 결손</u>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관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 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4. (생략)

5.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

6. 기타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⑥ (생략)

제7조의2(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인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자문단원,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 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

6. 그 밖에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명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49
----------	---------

제 출 일	2021. 5.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군정조정위원회에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의 성질상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정조정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및 기능 정비함(안 제2조)

- 1) 근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에 설치근거를 둔 자문기구
- 2) 기능정비: 이미 사문화된 내용이나 법령 중복 규정 삭제

나. 서면심의 근거 신설(안 제4조제4항~제6항)

- 1) 사유: 재난 또는 안전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 2) 의결정족수 적용 및 회의 작성 제외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안 제3조·제4조·제7조·제7조의2)

- 1) 인⇒명, 규정에 의하여⇒에 따라, 기타⇒그 밖에

라. 법령 등 중복 규정 삭제(안 제8조·제9조)

- 1) 실비변상: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수당 지급 가능
- 2)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규칙 제정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5. 7.~5.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47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지방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

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위원회 수당

나. 관련조문: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나. 내용: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위원회 수당이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위원회 수당: 2021년도 예산 8,400천원 확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50
----------	---------

제 출 일	2021. 5.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명시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중복규정 삭제(현행 제12조~제18조, 제20조)

- 1) 지방보조금 신청, 교부 결정·조건, 통지·방법
- 2) 지방보조사업자의 결제전용카드, 보조사업자의 신고, 성과평가 등

나. 기존 조례 내용 그대로 존치(안 제1조~제4조)

- 1)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현행 제1조·제2조)
-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현행 제11조)
- 3)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현행 제19조)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5조~제10조)

- 1) 변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신설: 구성, 위원장의 직무, 서면심사
- 3) 삭제: 위원 해촉
- 3) 존치: 회의, 의견청취, 운영세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11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8,400천원 확보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5. 17.~5.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직자윤리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48호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인”을 “명”으로 “5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자”를 “사람”으로 “3인”을
“5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을 “명”으로 각각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재적위원수 계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4. 법 제24조·제24조의2, 제25조부터 법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조 제목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의 규정”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구성)</u> ① <u>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3인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u>제3조(기능 및 관할)</u>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 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p>② 위원회의 관할은 군 소속 5급 이하</p>	<p><u>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구성)</u> ① <u>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군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 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생략)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 결의 요구

4. 법 제24조·제24조의2, 제25조부터 법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주사로

<p>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한다.</p>	<p>한다.</p>
<p>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의 규정</u>으로 정한다.</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의 의결</u>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위원회 수당
- 나. 관련조문: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나. 내용: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가. 위원회 수당이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나. 위원회 수당: 2021년도 예산 840천원 확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51
----------	---------

제 출 일	2021. 5.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촉위원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사항 반영

1) 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 자격 변경(안 제2조)

가) 위원 총수 변경: 5명 ⇒ 7명

나) 위촉위원 확대: 3명 ⇒ 5명

다) 위원 자격 변경: 법관 ⇒ 판사, 검사, 변호사

2) 인용조문 변경(안 제6조)

나. 법령·조례 중복 규정 삭제(안 제3조·제8조)

1) 위원회 기능 및 관할: 「공직자윤리법」 제9조

2) 위원 수당 등: 「거창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제3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안 제2조·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84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4. 5.~4.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
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4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8조의6,
별표 9 및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만원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u><신 설></u></p>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8조의6, 별표 9 및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만원을 말한다.</u></p>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나. 비용발생 요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세종사무소) 파견 직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540	360	360	360	360	1,980

3. 관련 의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거창군 외의 지역에 파견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1년 기준)

직급보조비: 540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승욱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52
----------	---------

제 출 자	2021. 5.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거창군 외의 지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여 처우개선 및 근무의욕을 북돋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1) 특수업무수당 외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신설
- 2)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에 따라 목적조항에 위임조문 추가(안 제1조)

다.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신설(안 제4조)

- 1) 위임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3호
- 2) 추가 지급액: 월 3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6, 별표 14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540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4. 2.~4.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
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50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8호
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u>1. 장기근속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u></p> <p><u>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u></p> <p><u>3.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u></p> <p><u>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u></p> <p><u>5.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u></p> <p><u>6. 구내식당 운영 지원</u></p> <p><u>7.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u></p> <p><u>8.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u></p> <p><u>9.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u><삭 제></u></p> <p><u>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u></p> <p><u>2.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u></p> <p><u>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u></p> <p><u>4.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u></p> <p><u>5. 구내식당 운영 지원</u></p> <p><u>6.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u></p> <p><u>7.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u></p> <p><u>8.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53
----------	---------

제 출 일	2021. 5.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국외시찰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근속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삭제(안 제7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가) 예고기간: 2021. 5. 14.~5.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51호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교육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유치 및 관리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46
----------	---------

발의일자	2021. 5. 18.
발 의 자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신재화, 김향란, 박수자, 권순모 이흥희 의원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를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4조)
- 마.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정함(안 제5조)
드론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촉진산업, 기반조성사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및 행사개최,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 바. 드론활용사업의 확대를 정함(안 제6조)
- 사. 드론체험 및 교육을 정함(안 제7조)
- 아. 드론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6 1.~6.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52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수는 군”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를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제19호다목”으로 “경우”란을 “경우 또는 시설”이란으로 “경우를”을 “경우 또는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사용료·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전연도의 연간사용료·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 제9항)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⑤ 영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1)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2)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3)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4)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나.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 1)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2)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3)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 4)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4.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5.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나.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다.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제71조제4항 중 “때”를 “경우”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에서”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4조 중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현재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제84조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u>군수는 군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2조(관리책임)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u>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u> 5. <u>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무상대부</u> ④ (생략) ⑤ 삭제< 2019.7.1.> ⑥~⑩ (생략)</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삭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⑩ (현행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p>
<p>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영 제13조제3항 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u>조례로 정하는 경우</u>”란 <u>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u> ② (생략)</p>	<p>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영 제13조제3항 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제19호다목,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u>조례로 정하는 경우 또는 시설</u>”이란 <u>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시설을 말한다.</u></p>

<신 설>

제25조(토석 채취료)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27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생략)

②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절차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토석 채취료)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③ (생략)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제29조(사용료·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⑤ 영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1)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2)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3)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4)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2.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3. 대부료 및 사용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⑦·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나.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1)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2)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3)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4)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4.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5.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나.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다.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⑥·⑦ (현행 제7항·제8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⑦ (생략)

제83조(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

① (생략)

②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4호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84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83조(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4호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제84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55
----------	---------

제 출 일	2021. 5.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 6. 23.)으로 수익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조례로 그 사항을 정하여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 일부 삭제(안 제6조제3항제4호·제5호)

- 1)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 2)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무상대부

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수익계약 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15조의2제3항)

다. 대상과 내용이 불명확한 납부유예 규정 삭제(안 제28조제3항)

- 1) 영 제14조 및 제32조 납부유예 근거 신설

라. 사용료·대부료 5퍼센트 이상 증가분 감액조정 비율 확대(안 제29조)

- 1) 감액을 100분의 70 ⇒ 100분의 100

마.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30조제4항·제5항)

- 가)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 생산·전시·판매: 100분의 30
- 나)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용·수익 등: 100분의 50
- 다)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100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9조·제33조·제34조·제58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17조·제29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5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4. 20.~5.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53호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및”을 “와 거창군”으로 “운영 등”을 “운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제2조제1항 중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제2항 중 “간사”를 “군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u>운영</u>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u>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p> <p>제3조(회의)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u>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의2(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u></p> <p>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u>위원회</u>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u> 2. <u>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u> 3.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u>

제5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삭제>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위원회 수당
- 나. 관련조문: 제3조(회의)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나. 내용: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가. 위원회 수당이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나. 위원회 수당: 2021년도 예산 3,500천원 확보

작성자 민원소통과장 정 현 수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54
----------	---------

제출일	2021. 5. 2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의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제때에 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1조의2)

나. 서면 심의·의결 근거 및 적용규정 마련(안 제3조·제5조)

- 1) 사유: 경미한 내용, 긴급할 때, 천재지변 등
- 2) 의결정족수 적용, 회의록작성 제외

다. 법령 중복·재기재 규정 삭제(안 제9조)

- 1) 위원 수당
- 2)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개별조례 규정없이 수당지급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

나. 예산조치: 위원수당 2021년도 예산 3,5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4. 13.~5. 3.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54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조 제목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일 것
2.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일 것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감경률 100분의 50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경대상	감경률
15.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②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거창군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호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별표 4 중 제2호 감면율 100분의 50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라.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일 것 2.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일 것 <p><삭 제></p>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56
----------	---------

제출일	2021. 5. 2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자 수 감소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함(안 제6조제2항·부칙)
- 1) 감면조건: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 중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
 - 2) 감면대상: 체육시설, 수승대 썰매장·야영장·오토캠핑장, 공영주차장·군청사 부설주차장,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주차장
 - 3) 감면율: 100분의 50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제11조
 - 2) 「지방자치법」 제136조·제139조·제144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5. 12.~5.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55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설예약 등) 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 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조 제목 “입장료 등 면제”를 “입장료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0호의4”를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기존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②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7조·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장 및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 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 체험료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u>2시간 30분 내외</u>	<u>어른: 10,000원</u> <u>청소년·어린이: 5,000원</u>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조의2(시설예약 등) 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생 략)</u> <u>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u>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u>제10호의4</u>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6조(입장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u>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사용허가를</p>
<p><u>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생 략)</u> <u>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u>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u>제10호의4</u>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6조(입장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u>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사용허가를</p>	<p><u>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u> <u>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u>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u>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u>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u>③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u>제6조(입장료 등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u>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반환한다.

<신 설>

②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신 설>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장 및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8조(위탁 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영 제9조의7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58
----------	---------

제 출 일	2021. 5.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군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시설사용의 예약, 취소시 반환근거 등을 마련하여 힐링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예약 등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산림휴양관·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별표 3)
- 다.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 라. 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을 신설함(안 제7조)
- 마. 위탁 운영을 신설함(안 제8조)
- 바.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기준 명확히 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5. 6.~5.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56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각각 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으로 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로 “kg이상”을 “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2이”를 “별표 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앞의 “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을 삭제한다.

제15조 조 제목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

기의 재질)”을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

제21조 앞의 “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다.”를 “않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다.”를 “같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다.”를 “함”으로 한다.

제26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가전제품류란, 생활용품란, 그 밖의 폐기물란의 마지막 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그 밖의 폐기물의 간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별		규 격	처리비
가전 제품류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8,000
생활용품	어린이 카시트 (유아보호용 장구)	모든 규격	2,000
그 밖의 폐기물	간판	90×270센티미터 이상	10,000
		60×180센티미터 이상	7,000
		90×270센티미터 미만	4,000
		60×180센티미터 미만	3,000
	입간판	3,000	
	그 밖에 미선별 생활폐기물	10킬로그램 기준	2,000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비고란 중 “1매당”을 “장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는 제7조제6항 및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p> <p>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u>범위 내에서</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u>폐기물처리시설</u> (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u>의하여</u>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③ <u>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u>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kg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삭 제></p> <p>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u>범위에서</u>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u>범위에서</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u>폐기물처리시설로</u>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u>따라</u>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③ <u>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u>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p>	<p><삭 제></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p>

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중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②~③ (생략)

<삭제>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쓰레기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생 략)

제7장 보칙

<삭 제>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및 제7조 관련)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가. 골판지상자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2)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3)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린 후 배출 2)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4)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다. 신문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라.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마.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바. 그 밖의 종이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5)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6)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7) 비해당 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관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4. 금속캔	가. 음료·주류캔, 식료품캔(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2)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나.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2)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3)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P.P마대에 담아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쟁반형 용기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쟁반형 용기류(음료용기, 세정용기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5)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과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각종 비닐류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2)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3)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4)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8.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가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4) 비해당 품목: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	가. 면의류 나. 그 밖의 의류 가.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나.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다.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라. 그 밖의 합성섬유류	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갖춰 둔 헌옷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10.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자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2)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3) 주요 거점에 갖춰 둔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11.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14. 가전 제품류	대형가전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제품	1)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2)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소형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별표 3]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text{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 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나.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 다.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라.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2.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단위: 원)

용량	공급 가격(장당)	판매 가격(장당)
3리터	45	50
5리터	91	100
10리터	182	200
20리터	364	400
50리터	819	900
75리터	1,228	1,350<신 설>
100리터	1,638	1,800<삭 제>
50리터 (pp)	964	1,060
100리터 (pp)	1,929	2,120<삭 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59
----------	---------

제 출 일	2021. 5.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 및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 신설(안 제7조제6항)
 - 1)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 2)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 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 의무 부과(안 제7조의2)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에 따른 예외 신설(안 제12조의2)
- 라.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안 별표 3)
 - 1) 삭제: 100리터(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
 - 2) 신설: 75리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1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5. 3.~5. 24.
 - 나) 예고결과: 의견 1건(일부 반영),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p>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희봉위생공사 지회(지회장 이영진)</p>	<p>별표 1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및 수 수료 징수 기준에 -안마의자, 어린이 카 시트 추가 -응접세트 삭제 -간판 규격 세분화를 요구함</p>	<p>-반영: 안마의자, 어린 이 카시트 신설, 간판 규격 세분화함. -반영하지 않음: 응 접세트의 경우, 도내 9개 시군이 운영 중 으로 계속 존치</p>	<p>일부 반영</p>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57호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을 “거함대로 3372-60”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일”을 “그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13조·제14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에 둔다.</p> <p>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u>별표</u>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p> <p>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u>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u>거합대로 3372-60</u>에 둔다.</p> <p>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u>별표 1</u>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u>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u>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④ <u>그날</u>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p> <p>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별표 2</u>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1. <u>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u> 2. <u>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u> 3. <u>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u> 4. <u>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u> 5.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들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¹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u>선순위자</u> 7.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8. <u>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u> 9. <u>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u> 10. <u>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p> <p><u>제10조(관람자의 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과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u></p> <p><u>제12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u></p>	<p>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u>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u></p>

현 행	개정안
<p>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과학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p> <p>⑤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준용) ①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과학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p>	<p>있다.</p> <p><삭 제></p>

현 행	개정안
<p><u>준용한다.</u></p> <p><u>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별표 2] <신 설>

관람료 면제기준(제7조제1항관련)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들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6.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
17.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8. 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 설립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60
----------	---------

제출일	2021. 5. 2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천적생태과학관 관람료를 면제하여 그들을 예우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에서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해당하는 규제정비(안 제6조제2항, 제10조)
- 다.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함(안 제7조제1항·별표 2)
 - 1)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모두 기재
 - 2)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
- 라. 법령 중복·재기재 정비(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5. 12.~5.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658호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보충식품구입비(특성에 따른 6가지 패키지)

나. 관련 조문: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56	56	56	56	56	280

3. 관련 의견

거창군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 식생활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55백만원

나.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홍보비: 1백만원

작성자: 보건소장 이정현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의안 번호	2021-57
----------	---------

제출일	2021. 5. 2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민영양관리법」에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는 등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함께 규정함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국민영양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2조·제3조)

1) 기본방향 및 목표, 세부 추진계획, 행정·재정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련 제도 개선

2) 시행계획 수립 시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함

3) 경상남도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법령위임 필수조례

다.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을 정함(안 제4조)

라. 업무의 위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56,566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2.~4.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규칙 제1314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장”을 “소장(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중 “별표”를 “별표 1, 별표 2”로 한다.

별표 1(기존 별표) 민원소통과 중 단위업무 9. 제증명발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업무	사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9. 제증명 발급	1. 거창군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름 제증명 발급	○

별표 1 및 별표 2(기존 별표) 중 보건소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사무전결 기준) <u>군수·부군수·국장·담당관·과장·소장</u>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군수 결재사항 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p> <p>2. 부군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집행 다. 국장·담당관·과장·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p> <p>3. 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과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p> <p>4. 담당관·과장과 소장 전결사항 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집행</p>	<p>제3조(사무전결 기준) 군수·부군수·<u>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담당관·과장·소장(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군수 결재사항 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p> <p>2. 부군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집행 다. 국장·담당관·과장·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p> <p>3. 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과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p> <p>4. 담당관·과장과 소장 전결사항 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집행</p>

마. 소관 업무의 지도와 관리
5. 6급 이하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제4조(전결방법) ① 부군수·국장·담당관·과장·소장은 **별표**에 따라 전결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제5조(전결처리 예외) ① **별표**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적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마. 소관 업무의 지도와 관리
5. 6급 이하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제4조(전결방법) ① 부군수·국장·담당관·과장·소장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

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제5조(전결처리 예외) ① **별표 1, 별표 2**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적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47
----------	---------

제출연월일	2021. 6. 25.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 사무전결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 단위업무 전결기준 변경(안 별표 1)

- 1) 전결권 소장⇒과장으로 변경: 89개 단위업무
- 2) 정신건강증진담당 신설: 14개 단위업무 추가
- 3) 사무명칭 변경: 8개 단위업무
- 4) 신규업무 추가: 49개 단위업무

나. 보건소 민원 단위사무 전결기준 변경(안 별표 2)

- 1) 전결권 소장⇒과장으로 변경: 36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6. 11.~6.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규칙 제1315호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조 중 “회계규칙”을 각각 “지방회계관리훈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 분임재무관 란의 “농업기술센터: 회계업무 담당과장”을 “회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u>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u>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이하 “<u>회계규칙</u>”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통합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u>회계규칙</u>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와 같다.</p> <p>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u>회계규칙</u> 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략)</p> <p>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u>회계규칙</u>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략) ② <u>회계규칙</u>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p>	<p><u>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이하 “<u>지방회계관리훈령</u>”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통합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u>지방회계관리훈령</u>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와 같다.</p> <p>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u>지방회계관리훈령</u> 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현행과 같음)</p> <p>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u>지방회계관리훈령</u>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현행과 같음) ② <u>지방회계관리훈령</u>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예산집행품의) <u>회계규칙</u>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p>	<p>제5조(예산집행품의) <u>지방회계관리훈령</u>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u>회계규칙</u> 제22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전액으로 한다. 다만, <u>회계규칙</u>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3. (생략)</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u>지방회계관리훈령</u>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전액으로 한다. 다만, <u>지방회계관리훈령</u>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3. (현행과 같음)</p>
<p>제7조(출납원 사망 등으로 인한 다른 공무원 지정기준) <u>회계규칙</u> 제97조 및 제13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다른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p>	<p>제7조(출납원 사망 등으로 인한 다른 공무원 지정기준) <u>지방회계관리훈령</u> 제97조 및 제13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다른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p>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48
----------	---------

제출일자	2021. 6. 25.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위임규정인 행안부 훈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약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소 과 신설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을 일부 개선·보완함으로써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인 행안부 훈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약칭 변경(안 제명, 제1조~제7조)

- 1) 위임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2) 제명: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3) 약칭: 회계규칙 ⇒ 지방회계관리훈령

나. 보건소 과 신설에 따른 제1관서 분임재무관 변경(안 별표 1)

- 1) (현행) 농업기술센터: 회계업무 담당과장
- 2) (변경) 회계업무 담당과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회계법」 제46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1조·제3조
-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가) 예고기간: 2021. 6. 11.~6.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규칙 제1316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청

- 가. 물품관리관: 재무과장
- 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과장
- 다.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주사
-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과 주무담당주사

2. 의회

-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 나. 물품출납원: 의사담당주사

3. 직속기관, 사업소

- 가.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은 회계담당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 나. 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사
- 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주사

4. 읍·면

가. 물품관리관: 읍·면장

나. 물품출납원: 읍은 총무과장, 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담당업무주사

제36조제1호다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정수관리 대상 물품)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5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p>1. <u>본 청</u></p> <p style="margin-left: 20px;"><u>물품관리관 - 재무과장</u> <u>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u> <u>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주사</u> <u>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u></p> <p>2. <u>의회</u></p> <p style="margin-left: 20px;"><u>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u> <u>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u></p> <p>3. <u>직속기관, 사업소</u></p> <p style="margin-left: 20px;"><u>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u> <u>물품출납원 - 경리담당주사</u> <u>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u></p> <p>4. <u>읍·면</u></p> <p style="margin-left: 20px;"><u>물품관리관 - 읍·면장</u> <u>물품출납원 - 읍은 총무과장, 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u> <u>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업무주사</u></p> <p>②~③ (생략)</p> <p>제36조(불용결정 등) 군수는 본청 또는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1. <u>본청</u></p> <p style="margin-left: 20px;">가.~나.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다. <u>실·과장</u>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비정수물품에 한한다)</p>	<p>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5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p>1. <u>본 청</u></p> <p style="margin-left: 20px;">가. <u>물품관리관: 재무과장</u> 나. <u>물품운용관: 각 담당관·과장</u> 다. <u>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주사</u> 라. <u>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과 주무담당주사</u></p> <p>2. <u>의회</u></p> <p style="margin-left: 20px;">가. <u>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u> 나. <u>물품출납원: 의사담당주사</u></p> <p>3. <u>직속기관, 사업소</u></p> <p style="margin-left: 20px;">가. <u>물품관리관: 직속기관은 회계담당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u> 나. <u>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사</u> 다. <u>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주사</u></p> <p>4. <u>읍·면</u></p> <p style="margin-left: 20px;">가. <u>물품관리관: 읍·면장</u> 나. <u>물품출납원: 읍은 총무과장, 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u> 다. <u>분임물품출납원: 담당업무주사</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6조(불용결정 등) 군수는 본청 또는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1. <u>본청</u></p> <p style="margin-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다. <u>담당관·과장</u>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비정수물품에 한정한다)</p>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정수관리 대상 물품) 영 제 5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

정수관리 대상 물품(제41조의2 관련)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탐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정수책정기준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향온향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49
----------	---------

제출연월일	2021. 6. 25.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 6. 23.)으로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던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사항 반영(안 제26조·제36조)

나. 법령 위임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 신설함(안 제41조의2·별표)

- 1) 현행: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안부 고시) 별표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 규정
- 2) 개정: 군수가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2)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안부 고시)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5. 28.~6.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규칙 제1317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12시”를 “11시”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할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매주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설예약 등) ①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시설사용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경우에 예약시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임을 입증해야 하며, 예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①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라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다.

②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힐링랜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힐링랜드 게시판 등에 공고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입장시간 등) ①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 일일 입장 및 입실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및 입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힐링랜드 입장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날 <u>12시</u>까지 3. 주차장: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p>② (생략)</p>	<p>제2조(입장시간 등) ①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 일일 입장 및 입실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및 입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힐링랜드 입장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날 <u>11시</u>까지 3. 주차장: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입장료 등 세부기준) ①~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3조(입장료 등 세부기준) ①~③ (생략)</p> <p>④ <u>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할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u></p>
<p>제4조(휴관일)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힐링랜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 휴관일: <u>매주 월요일</u>,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힐링랜드 게시판 및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u>홈페이지</u> 등에 그 사실을 공고</p>	<p>제4조(휴관일)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힐링랜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 휴관일: <u>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u>,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힐링랜드 게시판 및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u>인터넷 홈페이지</u> 등에 그 사실</p>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설예약 등) ① 조례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시설사용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경우에 예약시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임을 입증해야 하며, 예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①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라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다.

②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힐링랜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힐링랜드 게시판 등에 공고한 경우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42
----------	---------

제출연월일	2021. 5. 26.
제 출 자	산림과장

1. 제안이유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준공에 따른 숙박시설 등 운영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힐링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시설 입실시간을 변경함(안 제2조제2항제2호)

- 1) 현행)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 2) 변경)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나. 월요일 휴관일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1) 현행)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 2) 변경)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다. 시설예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라. 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5. 6.~5.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7월 7일

거창군 규칙 제1318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조 제목 “(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장 처리 수수료 납부)”를 “(대형 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납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장”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5호서식·제5의2호서식·제10호서식·제11호서식 중 생년 월일란에 “(남/여)”를 신설하고 별지 제9호서식 중 성명란에 “(남/여)”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장 처리 수수료 납부) ①~④ (생 략)</p> <p>제11조(폐기물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및 <u>처리장</u>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차량 폐기물 반입(계량)대장 (<u>별지 제14호 서식</u>) 2.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량)대장 (<u>별지 제15호 서식</u>) 3.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대장(<u>별지 제 16호 서식</u>) 	<p>제10조(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납부) ①~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폐기물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및 <u>폐기물처리시설</u>에 반입되는 폐기물 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 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차량 폐기물 반입(계량)대장 (<u>별지 제14호서식</u>) 2.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량)대장 (<u>별지 제15호서식</u>) 3.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대장(<u>별지 제 16호서식</u>)

[별표 1]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

봉투의 용량	용도	비고
3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음식물전용	
5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음식물전용	
1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재사용	
2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재사용	
5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재사용	
10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u><삭제></u>
50리터(PP)	일반용(가정, 사업장)	
<u>75리터</u>	<u>일반용(가정, 사업장)</u>	<u><신설></u>
100리터(PP)	일반용(가정, 사업장)	<u><삭제></u>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제2조 관련)						처리 기간	
						50일	
대행 신청 업자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 소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사무실: 자 택:		
	영업종류			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구분명)	처리구역	소유자 (관리자)	거 주 사 항		폐기물수집 운반예상량 (톤/일)	수집운반 방 법	비고
			세대주	인구수			
<p>「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귀하</p>							
<p>구비서류 1. 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붙임 서식)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명자료붙임)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재무재표붙임) 4.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 징수계획(수수료율 및 징수방법 등) 5.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p>							

<붙임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제2조 관련)

1. 대 행 신 청 자:

- 상 호: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주소
- 영업의 종류: (구역)

2. 대 행 계 획

구분	대 상 (규모)	위 치 (주 소)	거 주 사 항		폐기물수집 운반예상량 (톤/일)	폐 기 물 수집운반 처리방법	투입 인력 장비	비고
			세대주	인구수				

주) 주택단지, 상가, 공장, 공공시설별 대상내역표 첨부

3.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운영

--

4. 수집·운반·처리업 수지계산(재무재표 붙임)

구 분	수 입	지 출
자 산		
부 채		
자 본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서(제2조관련)							
대행 신청 업자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영업종류			영업구역			
대 행 지 정 내 역							
대상 (구분명)	처리구역	소유자 (관리자)	거 주 사 항		폐기물수집 운반예상량 (톤/일)	수집운반 방 별	비 고
			세대주	인구수			
<p>「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대행을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거 창 군 수</p>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44
----------	---------

제출연월일	2021. 5. 25.
제 출 자	환경과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안 별표 1)

1) 삭제: 100리터(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

2) 신설: 75리터

나. 생활폐기물 대행신청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5. 3.~5.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서식에 성별구분항목 신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 전작물(고추, 배추)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응양면 한기리	산38-1	당초	13,767m ²	2,418m ²	당초 : 3,487천원 변경 : 3,498천원	당초 : 2021.01.18.~ 2021.12.31 변경 : 2021.01.18.~ 2021.12.31	경남 거창군 응양면 하곡1 길 46-143	문 성 *
		변경	13,767m ²	2,367m ²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변경사유 : 등록전환 측량으로 인한 면적 정정(감 51m²)
5.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1

2021년 07월 01일

거 창 군 수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413-51 등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053-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413-51	20210707	20090702	거창군 가조면과 함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26-6, 산151-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934-12	20210707	2009070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 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47-1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37-1	20210707	20091228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28-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5길 24-4	20210707	20091228	거합대로의 시점에서 부터 다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741-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용전길 128	20210707	20090401	용이 밭에 앉은 형국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067-77, 1067-81, 1067-8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141-296	20210707	20090401	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2길 61	20210707	20090401	장팔길의 시작점으로 부터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70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정봉길 153-34	20210707	20090401	정봉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86	20210707	20090401	자연마을인 죽전마을을 통과하여 분기 되는 네번째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136-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촌2길 89	20210707	20090401	가지리 4개 마을중 가운데 자리한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70-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진마루길 248	20210707	20090401	진마루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43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길 174	20210707	20090401	착한 사람이 많이 나서 마을이 번창할 것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산89-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토점길 141-102	20210707	20090401	1670년대에 용기를 굽는 가마가 생겨서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8-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4길 35	20210707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거창군 거창읍 남부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7. 07.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1	35	주간선 도로	2,650	대 1-14	중 1-15	일반 도로	건고 382호 1967.05.24	-
변경	대로	1	11	35	주간선 도로	5,660	대 1-14	대 3-10	일반 도로		연장확장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1	대로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도로 연장확장 - L = 2,650m → 5,660m (증 : 3,0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대구고속도로의 거창IC와 산업단지, 경남도립거창대학, 송정택지지구를 연결하여 교통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처 및 지역 균형발전도모를 위해 도로연장 확장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4.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방법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며,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 (열람장소에 비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

거 창 군 수

- 1.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공고기간 : 2021.7.02.~ 2021.7.17.(15일간)
- 3.대상차량 : 경남82다6575

순번	차량번호	차명	모델연도	운행정지사유	운행정지일자
1	경남82다6575	봉고프런티어 4륜구동덤프	2002	기타	2021. 7. 02.

4.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공고 제2021-978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7. 07.

거 창 군 수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	
주거지역	소 계	4,873,912	-	4,873,912	0.6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1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1,738	-	3,144,368	0.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095	-	173,465	0.02	-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0.01	-
상업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0.04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지역	소 계	1,271,445	-	1,271,445	0.16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1,243,003	-	1,243,003	0.15	-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0	-
녹지지역	소 계	25,413,367	-	25,413,367	3.16	-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
	생산녹지지역	7,711,971	-	7,711,971	0.96	-
	자연녹지지역	16,046,636	-	16,046,636	2.00	-
관리지역	소 계	262,118,324	-	262,127,344	32.60	-
	보전관리지역	171,787,051	감) 56,820	171,730,231	21.35	-
	생산관리지역	8,261,516	-	8,261,516	1.02	-
	계획관리지역	82,069,757	증) 56,820	82,126,777	10.21	-
농림지역	469,415,799	-	469,406,779	58.37	-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06	-	
미지정	-	-	-	-	-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일원	보전관리	계획관리	56,82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하면 무릉리 일원에 남하지구 하천정비사업 시 확충되는 체육시설과 연계한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제2스포츠 타운	체육시설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일원	-	56,820	56,820		

나.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지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제2스포츠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신설 - 면적 : 56,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군민에게 질 높은 체육·문화시설 제공과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를 유치 및 체육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신설)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4. 관련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체육시설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열람장소에 비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궤도,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궤도, 주차장)의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6.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 주차장)사업
- 주 소 : 궤 도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주차장 - 거합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 사업개요 (변경)

1) 교통시설:궤도 (변경)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 계획시설 (당초)	교통시설	궤도 (상,하부 정류장)	고제면 개명리 산19-12번지	27,870.0	13,953.0	684.12	737.37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군 계획시설 (변경)	교통시설	궤도 (상,하부 정류장)	고제면 개명리 산19-12번지	27,870.0	13,953.0	637.95	853.2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2) 교통시설:주차장 (변경)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 계획시설 (당초)	교통시설	주차장	고제면 개명리 산19-14번지	7,939	7,939	67.6	67.6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군 계획시설 (변경)	교통시설	주차장	고제면 개명리 산19-14번지	7,939	7,939	173.6	173.6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증축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거창군청 산림과 (☎055-940-8895)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개요

면	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총계		8개 필지		47,376	13,953		
고제면	개명리	2051-13	주	7,964	3,475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51-14	잡	1,944	492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22-29	임	13,822	486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68	강삼석
고제면	개명리	산19-12	임	4,110	28		거창군
		산19-31	임	4,559	4,531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3,280		거창군
		2036-6	잡	1,551	1,551		거창군
		2036-5	잡	110	110		거창군

○ 주차장

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총계		12개 필지		19,302	7,939		
고제면	개명리	산19-23	임	120	120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29	임	420	420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27	임	72	72		거창군
		산19-28	임	28	28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20	임	2,461	2,461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1,953		국토교통부
		2036-4	차	1,226	1,226		거창군
		2036-3	차	370	370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7-3	전	79	79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6-1	전	535	535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6	차	326	326		거창군
		2036-2	도	349	349		국토교통부

7.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거창군청 산림과)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 FAX,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제출 주소 및 연락처

- ▶ 우편번호/주소 :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산림과
- ▶ FAX : 055-940-8895
- ▶ E-mail : tree0328@korea.kr

의견서 (제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 성 명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1. 7. 7. ~ 2021. 7. 26.
3. 공고대상 : 61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1년 7월 7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83호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2. 개정이유

-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정비과제 및 법제처 발굴 규칙정비과제를 개선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의 법령 근거없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2021년 실적 2022년 정부합동평가대상 경쟁제한 자치법규 과제 정비
- 법제처 발굴 규칙 정비과제 삭제(안 제6조·제9조·제10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등

4. 예고기간 : 2021. 7. 7.(수) ~ 7. 27.(화) /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26)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
라. 전화 055-940-8425, 팩스 055-940-8409, 이메일 choigiin@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055)940-842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지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저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 제3호)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군에 있어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9조·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격기준에 의한 기술자.”를 자격기준에 따른 기술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u>」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대행업자”란 <u>군수의</u>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대행업소”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p> <p>3. “시공”이란 「<u>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u>」 제5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지정신청) ①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u>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군에 있어야 한다.</u></p> <p>③ (생략)</p> <p>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p> <p>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아니한</u> 사람</p> <p>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u>아니한</u> 사람</p> <p>3. <u>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u>」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대행업자”란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u>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삭 제></p> <p>2. “시공”이란 「<u>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u>」 제5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지정신청) ①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u>취득한 사람으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사람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 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1천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대행업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사의 하자보수 대행업 손해 배상금)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제9조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보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제15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공사 면허 취득 자격기준에 의한 기술자.

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에

<삭 제>

<삭 제>

제15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공사 면허 취득 자격기준에 따른 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에

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행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 공사로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개월
2.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개월
3. 제13조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개월
4.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2개월

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행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 공사로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개월
2.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개월

<삭 제>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2개월

[별표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신 청 자 격 조 건		비 고
1. 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시공 기술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3. 영업시설 (거창군 소재)	○ 사무실 면적 20㎡이상 ○ 창 고 면적 25㎡이상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	명 칭	규 격	수 량
	작업차량(덤프트럭)	1톤 이상	1대 이상
	굴삭기	0.2㎡ 이상	1대 이상
	유압식 브레이크	20kg 이상	1대 이상
	포장절단기	120mm 이상	1대 이상
	핸드롤러	650kg 이상	1대 이상
	다짐기(콤팩타)	50kg 이상	1대 이상
	전기임팩트	40mm 이상	1대 이상
	발전기	5kw 이상	1대 이상
	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	50mm 이상	총 2대 이상
	새들천공기	13-50mm	1대 이상
	해빙기	-	1대 이상
5. 그 밖의 시설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	각 1대 이상
	PE 안전헬스	-	10개 이상
	칼라콘 및 걸이대	야광	10개
	공사홍보 표지판	60×90cm	5개
	공사안내 표지판	60×90cm	5개
	공사안내 삼각표지판	90cm	5개

※ ~~시공기술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삭제 <2016. 11. 29.>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삭제 <2019. 6. 25.>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2017. 1. 26.>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7]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2021. 1. 7, 일부개정]

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중략)

2. 제한요령

가. ~ 나. (생략)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삭제 <2005. 11.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문서(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제8조제1항제2호의 시공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